#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2017년 10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

## 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9월 29일 / 강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 상정·의결(2017. 10. 17)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강관리과장 노말선)

# □ 제안이유

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## □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2조)

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고유하며, 평화로운 도시,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

1

## 나. 사업(안 제3조)

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,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사업,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

#### 다. 협의회 구성(안 제4조)

- 1) 정회원 : 협의회의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위
- 2) 준회원 : 정부기관, 협력대학 및 연구소 등

#### 라. 의무(안 제7조)

회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,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회비 납부 의무 등을 진다.

# 마. 임원 구성 및 임기(안 제10조)

- 1) 의장도시, 부의장도시, 감사도시로 임원 구성
- 2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

## 바. 회의(안 제15조)

- 1)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중 개최
- 2) 임시총회는 의장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

## 사.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(안 제18조 ~ 제21조)

- 1) 운영위원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은 의장도시에서 지명
- 2) 실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실무자로 구성
- 아.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~제27조)
- 자. 세입ㆍ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(안 제2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1)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
- 2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98조

나. 예산조치

협의회 경비부담금 200만 원 반영※ 매년 200만 원 예산 반영 조치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강희순)

- 본 동의안은 서울시 22개의 자치구 포함 전국 87개 자치단체가 가입된 협의회 규약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미세 먼지 등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는 사회의 모든 집단의 참여 나아가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,
- 적은 규모의 비용부담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위한 자치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및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의 개발 등으로 건강도시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본 규약안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※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, 사회적,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는 가운데,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.(세계보건기구, 2004)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생략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※ 붙임 관계법령 1부.

## □ 지방자치법

-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  -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  -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- 제153조(협의회의 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  -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**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**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협의회의 명칭
  - 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  - 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  - 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  - 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  - 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제155조(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)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, 의견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- 제156조(**협의사항의 조정**)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(調整) 요청을 하면 시·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 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  -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조정하여야 한다.
- 제157조(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 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  -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.
- **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**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 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- 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)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 "라 한다)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, 특수행정수요의 충족, 공공시설의 공동설치, 행정정보의 교환, 행정·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·도로 구성한다.
- 제96조(협의회 사무소의 위치)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(이하 "중심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에 둔다.
- **제97조(협의회 구성 보고)**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 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협의회의 명칭

- 2.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
- 3. 구성목적
- 4. 구성일자
- 5. 협의회의 규약 사본

제98조(회장)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, 회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.